

다. 투명성이 높은 기업 등에 대한 출자총액제한 예외(법 제10조 제1항 본문, 제10조제7항제2호 및 제4호)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과 투명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내부건제시스템을 잘 갖춘 기업, 계열회사 수가 적고 소유구조가 단순한 기업집단 및 소유와 지배간 괴리가 작은 기업집단을 출자총액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주회사에 소속된 회사를 출자총액제한 대상에서 제외함.

라.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한도 축소(법 제11조제3호 및 안 부칙 제9조)

계열금융보험사를 통한 지배력확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한도를 현행 30퍼센트에서 2006년 4월 1일부터 매년 5퍼센트씩 단계적으로 15퍼센트까지 축소함.

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비상장·비등록회사의 중요사항 공시(법 제11조의3 신설)

시장감시를 통한 소유지배구조 개선 및 투명성 제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비상장·비등록회사에 대하여 소유지배구조·재무구조·경영활동 관련 중요사항에 대한 공시의무를 부과함.

바.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을 3년 시한 제도입(법 제50조제5항 내지

제9항 및 법 제69조 제1항 신설, 법 부칙 제2조)

금융기관을 통한 부당내부거래의 조사를 위하여 2004년 2월 4일로 유효기간이 만료된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을 3년 시한으로 제도입하기로 하되, 그 발동요건을 강화함.

사. 법 위반 신고 등에 대한 포상금 제도 도입(법 제64조의2 신설).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국민의 신고를 적극 유도하기 위하여 이 법의 위반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법제처 제공>

개정된 법률에 대하여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법제처 또는 국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홈페이지 : WWW.moleg.go.kr

국 회 홈페이지 : WWW.assembly.go.kr

대통령령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노무현 인

2004년12월31일

국무총리 이 해 찬

국무위원
재정경제부 장관 이 헌 재

○대통령령 제18626호

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개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카목을 삭제하고, 동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10.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한 한국철도공사가 영위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지역별로 총괄하는 장소

11.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제1항에 규정된 부가우편역무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제5조제4항중 “승인(사업장이 2 이상의 지방국세청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미리 주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여부”를 “승인 여부”로 한다.

제5조의2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승인하여야 하고, 종된 사업장 또는 종전의 주된 사업장이 주된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의 관할구역외의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를 “승인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한다.

제20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3호를 삭제한다.

2.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유무역지역 제26조제1항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5호의2를 삭제하며, 동항제6호의2중 “2004년 12월 31일”을 “2005년 12월 31일”로 한다.

마. 컨테이너수리업, 운수업중 해운대리점업 및 보세구역내의 창고업

제33조제1항제4호사목중 “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업”을 “투자회사,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신탁업”으로 하고, 동호에 아목 내지 차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중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로 한다.

아. 투자일임업

자. 사모투자전문회사업

차. 사모투자전문회사에게 자산운용, 자산보관, 증권판매 또는 일반 사무관리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12.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신용정보업자가 200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채권추심용역

17.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채권관리자가 행하는 주택지당채권 · 학자금대출채권의 관리 · 운용 및 처분사업

제35조제1호 각목외의 부분중 “독립된”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

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으로 하고, 동호(타) 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호(파)목중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를 “일의 성과”로 한다.

(타) 작명·관상·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제46조제18호중 “디젤기관차”를 “디젤기관차 및 이식용 각막”으로 한다.

제58조제6항중 “기업자”를 “사업시행자”로 한다.

제60조제3항중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제3항”을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49조제3항”으로 한다.

제61조제5항중 “고속철도건설촉진법에 의한 고속철도의 운영사업자”를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한 한국철도공사”로 한다.

제6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중 “제3항제3호”를 “제3항 단서”로 한다.

③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 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만을 제출한다.

1.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 제68조제2항제4호중 “신용카드가맹점”을 각각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한다.

제71조제1항중 “관세법 제11조·제16조·제17조·제19조·제38조·제39조·제41조 내지 제43조 및 제253조제4항”을 “관세법 제11조,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38조 내지 제39조, 제41조 내지 제43조 및 제253조제4항”으로 한다.

제74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법 제25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4항 단서”를 “법 제25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74조의2에 제6항 내지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법 제2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기준사업장”이라 한다)의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한 기간 동안에 기준사업장과 법 제2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에 대하여 간이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2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의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이거나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간이과세자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달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

음 과세기간부터 당해 사업장외의 사업장에 대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장을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4조의4제7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74조의5제4항 각호외의 부분중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증빙서류”를 “사업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증빙서류”로 하고, 동조동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음식접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소득세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복식부기의무자는 제외한다)가 농·어민이나 개인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중 과세공급대가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액에 대하여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만을 제출한다.

제79조의2제1항에 제6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중 “제6호의2”를 “제6호의2·제6호의3”으로 한다.

6의3.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제1항에 규정된 부가우편업무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제80조제2항중 “선불카드”를 “선불카드영수증”으로 한다.

제82조제1항중 “직불카드영수증”을 “직불카드영수증, 선불카드영수증

(실지명의회가 확인되는 것에 한한다)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5호중 “의료보험법·국민의료보험법”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1항제4호사목·자목·차목의 개정규정은 2004년 12월 6일부터 시행하고, 제35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사업장총괄납부의 승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4항, 제5조의2제3항 및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 신청 또는 철회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에 관한 적용례) ①제74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제7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74조의2제7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거나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장을 신규로 개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개정이유
2005년 1월 1일 시행되는 현금영수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현금영수증 복권제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거부자에 대한 경정조사제도를 시행하도록 하고,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한국철도공사 등에 대하여 사업장 특례를 인정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에 있어서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미군주둔지역의 관광특구에서 영업하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영(零)세율 적용기간을 1년간 연장하고, 이식용 각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장애인의 재활을 지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업기반공사, 한국철도공사 및 우정사업조직에 대한 사업장 특례(영 제4조제1항제4호타목 및 제11호 신설, 영 동조동항제10호)

- (1) 농업기반공사의 부동산임대사업, 한국철도공사의 철도사업 및 우체국 택배사업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적으로 거래를 행하는 장소마다 사업장으로 지정할 경우 사업장의 수가 과다하여지며, 각 장소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므로 업무가 가중되는 문제점이 있음.
- (2) 농업기반공사의 부동산임대업과 우체국 택배사업의 경우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고, 한국철도공사의 경우에는 지역별로 업무를 총괄하는 지방본부 등을 사업장으로 함.

- (3) 농업기반공사·한국철도공사 및 우정사업조직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서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나. 부가가치세 영세율제도의 적용기한 연장(영 제26조제1항제6호의2)

- (1)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미군 주둔지역이 2005년부터 이전됨에 따라 당해 지역중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특구안에서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음.
- (2)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미군 주둔지역의 관광특구안에서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영(零)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이러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제도의 적용기간을 1년간 연장함.
- (3)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미군 주둔지역의 이전으로 인하여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미군 주둔지역의 관광특구안에서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영세사업자의 경영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의 범위 조정(영 제 33조제1항제4호사목, 동호자목·차목 신설)

(1)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개정(법률 제7221호, 2004. 10. 5. 공포, 2004. 12. 6. 시행)으로 간접투자기구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됨에 따라 이미 면세적용을 받고 있는 다른 간접투자기구와 과세형평에 관한 문제가 발생함.

(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의 대상범위에 사모투자전문회사업 등을 추가하는 등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의 범위를 확대함.

(3) 사모투자전문회사와 다른 간접투자기구와의 형평을 유지하여 투자를 활성화하고 자금운용을 효율화할 것으로 기대됨.

라. 채권추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기간 연장(영 제33조제1항제12호)

(1)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신용정보업자가 2005년 12월 31까지 공급하는 채권추심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자 함.

(2) 채권추심용역에 대하여 면세함으로써 연체자에 대한 채권추심용역의 수수료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됨.

마. 개인이 공급하는 인적용역의 면세범위 명확화(영 제35조제1호)

(1) 개인이 공급하는 인적용역의 면세범위가 불명확하여 납세자의 혼란 소지가 있어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개인이 공급하는 인적용역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을 명시함.

(3) 개인이 공급하는 인적용역의 면세범위를 정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과세기관과 납세자간의 마찰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이식용 각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영 제46조제18호)

(1) 이식용 피부 및 뼈는 장애인의 재활에 주로 사용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으나, 이와 유사한 이식용 각막은 면세되지 아니하여 장애인의 부담이 큼.

(2) 이식용 각막을 수입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도록 함.

(3) 이식용 피부·뼈 등의 의료용품과 형평을 맞추며 장애인의 재활노력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사업과 관련없는 지출범위 명확화(영 제60조제3항)

(1)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지출중 당해 법인의 부담비율을 초과하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불명

확하여 납세자의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음.

(2) 공동사업자의 공동비용중 당해 사업자의 부담비율을 초과하여 지출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로 보지 아니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도록 명시함.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고 과세기관과의 분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거부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 (영 제68조제2항제4호)

(1) 2005년 1월 1일부터 5천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하여 영수증을 지급하도록 하는 현금영수증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므로 현금영수증제도의 정착을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

(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으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내용이 불성실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할 수 있도록 함.

(3) 현금영수증가맹을 적극 유도하여 현금영수증제도를 활성화

화함으로써 자영업자의 소득을 투명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자. 간이과세자의 일반과세자로의 전환에 따른 사후관리(영 제74조의2제6항 내지 제8항 신설)

(1) 연매출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사업장에 대하여는 간편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는 바, 2005년 1월 1일부터 이러한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장외에 일반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장을 함께 보유한 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을 전환하게 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일반과세사업장의 연매출액 변동에 따라 사업자의 과세유형이 달라지므로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간이과세를 포기하거나 일반과세사업장을 신규로 개업하는 경우에 간이과세사업장의 일반과세 전환시기를 정함.

(3) 간이과세사업장의 일반과세사업장으로의 전환시기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